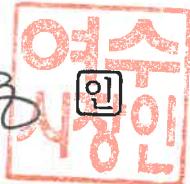


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12 월 29 일

여 수 시 장

2023.12.29



여수시 조례 제2028호

붙임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 1부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여수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부터 제7항 까지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본조 전부개정 2019. 4. 1 6.]</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u><신 설></u></p> <p>6. (생 략)</p> <p>② · ③ (생 략)</p> | <p>제2조(정의) -----</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